2025학년도 감리교신학대학교 수시 및 정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감리교신학대학교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전 형 명	수시	정시 '나'
신학부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3명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
	정원제한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1) 2025학년도 학부제(신학부)로 모집한 학생은 1학년(1, 2학기)을 이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전공(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 기독교심리상담학전공)을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학생의 전공별 배정인원은 학부제 전공배정 절차에 따른다.

Ⅱ 전형일정

모집시기	구 분	일 시	비 고
수시	원서접수	2024년 9월 9일(월) 10:00 ~ 13일(금) 17:00	현장 및 우편 접수
	면 접	2024년 10월 12일(토) 14:00	본교 신석구기념관
	합격자발표	2024년 11월 01일(금) 11:00	본교 홈페이지 (www.mtu.ac.kr)
	등록기간 (예치금납부)	2024년 12월 16일(월) ~ 18일(수)	지정은행
	최종등록	2025년 2월 10일(월) 10:00 ~ 12일(수) 17:00	지정은행
정시	원서접수	2024년 12월 31일(화) ~ 2025년 1월 3일(금) 17:00	현장 및 우편 접수
	면 접	2025년 1월 16일(목) 14:00	본교 종합관
	합격자발표	2025년 2월 04일(화) 11:00	본교 홈페이지 (www.mtu.ac.kr)
	최종등록	2025년 2월 10일(월) 10:00 ~ 12일(수) 17:00	지정은행

※ 미등록 충원 및 등록 일정은 수시 및 정시 전형 일정에 따라 진행

Ⅲ 지원자격

1.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다음 각 가), 나)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독교세례를 받고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가) 기본학력요건 : 초·중·고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①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나)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공통 기준

- 학생의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학생의 체류기간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의 체류기간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해외 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② 세부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해외 영주 교포의 자녀	공통기준을 충족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영주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
해외 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통기준을 충족하고 해외근무자 및 배우자가 해외근무자의 국가에서 함께 거주하는 해외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공통기준을 충족하고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및 배우자 해외근무지 국가에서 함께 거주하는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재외국민 (자영업, 현지법인, 해외파견 교직원)	공통기준을 충족하고 해외근무자 및 배우자가 해외근무자의 국가에서 함께 거주하는 해외근무자의 자녀
기타재외국민 (해외선교활동)	공통기준을 충족하고 감리교단 소속단체에서 해외에 파견하여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선교요원의 자녀로 소속연회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2. 정원제한없이 모집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독교세례를 받고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대 상	지 원 자 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외국인 TOPIK 4급 이상)	12년	12년	12년	–	–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 포함)	통일부 확인			–	–	–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2)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국적			외국국적				

Ⅳ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 형 명	면접	계
신학부	재외국민과 외국인	100% (1,000점)	100% (1,000점)

*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서류전형(100%) 및 면접 실시 (필요한 경우 전화인터뷰 실시)

1) 면접방법 : 자기소개 1~2분 / 2인의 교수가 영성, 인성 등의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를 평가하는 면접

2) 면접기준 : ① 대학지원동기 ② 의사표현력 ③ 인성과 적성 ④ 교회활동경력 ⑤ 태도

Ⅴ 선발원칙

1. 면접시험 성적에 의거 선발한다.
2. 동점자에 대한 사정은 다음 순으로 결정한다.
   ① 외국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
   ② 체류기간이 많은 자
3.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대학에서 정하는 사정원칙에 따라 합격을 불허 할 수 있다.
4. 면접에서 “F”를 받은 자 또는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Ⅵ 제출서류

1. 해외 영주 교포의 자녀

☞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소정양식)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전 가족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 여권 사본(부모·학생)
☞ 영주권 사본(부모·학생)
☞ 재외국민등록필증(부모·학생)/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2. 해외 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소정양식)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혹은 제적 등본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 여권 사본(부모·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3. 기타 재외국민

☞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소정양식)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학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 여권사본(부모·학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학생)
☞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선교사 파송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해외 선교사 자녀)
☞ 소속연회 감독 추천서(해외 선교사 자녀)

4.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소정양식)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신분증 사본(원본대조)

5.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소정양식)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신분증 사본(원본대조)
☞ 전가족 호적등본(해당국가)
☞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재정보증서류
  • 공통필수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부모(재정보증인)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소정양식)
☞ TOPIK 성적표(4급 이상)

6. 북한이탈주민

☞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소정양식)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초등교육법 시행령 98조3항)

7.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입학원서 및 공통제출서류(담임목사추천서)(소정양식)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전 가족 호적등본(해당국가)
☞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 여권사본(학생)
☞ 재정보증서류
  • 공통필수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부모(재정보증인)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소정양식)
☞ TOPIK 성적표(4급 이상)

■ 모집요강에 안내한 제출 서류 외에 지원자격 등과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서류가 위변조 되었거나 진위여부 조회 시 제출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Ⅶ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후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한 내 미도착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모집시기	서류 최종 제출 기간	비고
수시	2024년 9월 23일(월) 17:00	
정시	2025년 1월 03일(금) 17:00	

2.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합니다.
3. 모집요강에 위배된 입학원서와 지원자격이 미달된 입학원서는 무효로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해외학교 학력검증 확인 서류 확인사항

1) 지원자가 재학한 학교 소재 국가의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학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원본과 함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서류상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참고사항

1)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 정부 국무부의 인증사무소(Secretary of State)에서 발급합니다.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거주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신 협약가입국 현황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국가별 관련 기관 정보 등의 최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아포스티유 문의처 :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영사서비스/비자'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외교부 02-2100-7600, 또는 법무부 02-720-802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4)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2018.05.07. 현재)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벨리즈,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Ⅷ 지원자 유의사항

1. 고등교육법 기본사항

1) 복수지원 허용범위

①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대학 • 전문대학 제외)

②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됩니다.

2) 복수지원 금지

①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②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③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이중등록 금지

①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②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③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2. 기타 유의사항

1) 수시모집 지원자는 본교 및 타교 수시모집을 포함하여 최대 6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수험생이 6회 이상의 원서접수를 실시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2)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과 입학이 모두 취소됩니다.
3)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예치금 납부자 포함)해야 하며,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합격과 입학이 모두 취소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타 대학에 등록의사가 있는 합격자는 본교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4) 정시모집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간에는 복수지원을 금지합니다.
5) 접수된 입학 지원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Ⅸ 등록 및 환불 안내

1.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와 등록안내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합격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4. 합격자의 신체검사는 합격통지서 교부 시 배부하는 신체검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 포기자가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포기각서(소정양식)와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 취소 및 등록금 환불을 위한 등록포기각서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www.mtu.ac.kr)
6.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이 사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X 전형료

1. 전형료 : 70,000원

2. 전형료 반환

1)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가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사정은 반환불가)
3)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4) 전형료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대상자가 본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입학원서 작성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5)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 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XI 지원자격 관련 주요 해설

◈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일반적 자격기준 주요 해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이내) 전형의 지원자격 표준화

1)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한 자
2)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해외재학기간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③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해외체류일수 조건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③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기간	●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자격기준 주요 해설

1. 전교육과정

1)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사정에 의해 모국 수학한 경우는 대학별 확인).

2)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3)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이수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2. 보호자 등의 조건

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북한이탈주민 주요 해설

1.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98조, 98조의 2, 98조의 3)

1)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2)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인정

3)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 외국인 주요 해설

1. 재학 인정

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복수 국적자 제외)
2) 12년 미만 학제 졸업 인정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3) 11학년제, 12학년제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